

대구지방법원 2017. 5. 26 선고 2016가단128343, 2016가단128350(반소) 판결 [(본소, 취하)
구상금 청구의 소 · 손해배상(자)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4. D

반 소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7. 5. 12.

판결 선고 2017. 5. 26.

주 문

1.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4,227,041원, 반소원고 B, 반소원고 C, 반소원고 D에게 각 3,151,3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. 5. 3.부터 2017. 5. 26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반소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4분의 3을, 반소피고가 4분의 1을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16,867,918원을, 나머지 반소원고들에게 각 12,578,611원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3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반소피고는 E 화물자동차(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만 한다.)의 소유자인 소외 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망 G(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.)는 H 오토바이(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라고만 한다.)의 소유자이며, 반소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다.

나. 망인은 2016. 3. 21. 11:35경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I 에 있는 J 앞 노상을 동곡사거리 방면에서 금천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 왼쪽 뒷바퀴를 추돌하였다.(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.)

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던 중 2016. 5. 3.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거동불편, 폐렴으로 사망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내지 6호증과 을제1,2,3,4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같다.)의 각 기재

2. 주장

반소원고들은,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위 F가 2차로의 노폭 1/2을 침범한 상태로 불법주·정차를 한 잘못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보험차량을 충돌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F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

갑제1,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편도2차선 도로에서 편도1차선으로 좁아지고 좌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피보험차량이 2차로의 1/2이상을 침범하여 주·정차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, 을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F는 도로교통법 제34조가 규정한 정차,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,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, 오토바이는 2차로를 주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보험차량의 불법 주·정차 사실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보험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결과적으로 피보험차량의 불법 주·정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이로 인한 손해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.

나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1) 적극적 손해

을제6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,

- 반소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K병원에 2,090,340원, 대구 L병원에 4,317,170원 등 6,407,510원을 지출하였고,
- 환자이송비로 90,000원을 지출하였으며,
- 개호비로 1,710,000원을 지출하였고,
- 장례비로 3,000,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금 11,207,510원의 손해를 입었다.

2) 과실상계 등

갑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을제4,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한 사실과 피보험차량이 야간에 2차로의 1/2 이상을 침범한 채 불법 주·정차를 한 사정이 경합되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

의식소실과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과거 여러 가지 병력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실상 이러한 과거 병력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과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85% : 15%로 정함이 타당하다.

3) 적극적 손해의 계산

따라서 반소피고는 망인의 적극적 손해 총액 11,207,510원 중 15%에 해당하는 1,681,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
4) 위자료

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망인의 나이나 과거의 병력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위자료로 8,000,000원, 반소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1,000,000원씩을 정함이 타당하다.

5) 반소원고별 지급액 계산

① 적극적 손해 1,681,126원에 대하여 반소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(상속지분에 따른 청구) 원고 A에게 560,375원($=1,681,126 \times 3/9$),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73,583원($=1,681,126 \times 2/9$)을 지급하고,

② 망인의 위자료 8,000,000원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반소원고 A에게 2,666,666원($=8,000,000 \times 3/9$), 나머지 반소원고들에게 1,777,778원($=8,000,000 \times 2/9$)을 지급하고,

③ 여기에 반소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1,000,000씩을 계산하면 결국 반소원고 A에게 4,227,041원($=560,375 + 2,666,666 + 1,000,000$), 나머지 반소원고들에게 각 3,151,361원($=373,583 + 1,777,778 + 1,000,000$)을 지급함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4,227,041원, 나머지 반소원고들에게 각 3,151,3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. 5. 3.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. 5. 26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종화